### 포항시 공고 제2015 - 81호

「포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2015. 9. 포 항 사이트

# 포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행정의 복잡·다양화와 시민의 권리의식 증대로 다양한 유형의 소송 사건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 법규에 맞춰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송물가액이 30억 원이상인 사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경우 중요사건으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
- 중요사건의 경우 고문변호사 외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등을 소송대리

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보수에 관해서도 현실에 맞춰 변호사 보수 규정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 전자소송의 시행에 따라 전자화된 문서로 진행하는 사건은 종이서류 외별도의 전자문서를 보관·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중요 행정 기록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함(안 제17조제4항)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와 표 현으로 변경, 띄어쓰기, 자구수정 등을 정비함

### 3. 관계 법령

- ㅇ 민사소송법
- ㅇ 행정소송법
- ㅇ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4.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9.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예산법무과장, 주소: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270-2042~4, Fax: 270-2049, E-mail: westsidewind@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a href="http://www.ipohang.org">http://www.ipohang.org</a>)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시 또는 시장"을 "규칙은 포항시 또는 포항시장"으로, "소속기관(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를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로 한다.

제2조 중 "시를"을 "포항시 또는 포항시장과 그 소속기관(이하 "시" 라 한다)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예산법무과장"을 "소송총괄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그 밖에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송관계서류"를 "소송 관계 서류"로, "문서취급부서"를 문서 취급부서"로, "예산법무과장에게 분류 발송하여야"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이를 전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착오 분류로 소송 관계 서류가 잘못 전달되어 이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문서 취급부서에 반송하여 제1항에 따라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 또는 시장이"를 "시가"로, "예산법무과 장"을 각각 "소송총괄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참고사항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포항시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 이라 한다)의 의견

제7조의 제목 "(소송대리인등의 선임)"을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를 "(소속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로, "제1,2호서식)"을 "제1호 및 제2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속공무원중에서"를 "소속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소송대리인등의 직무)"를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로 하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위임장"을 "위임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단서의 규정에 의거"를 "단서 규정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매사건"을 "매 사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속 공무원중에서"를 "소속공무원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직원 중에서"를 "직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 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징구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7호서식)"를 "제7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송사건담당에 있어 예산법무과장의"를 "소송사건을 담당함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장의"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중요사건) ① 시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 2. 소송물가액이 30억 원 이상의 민사소송 사건

- 3.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 ②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소송사건은 법률고문 외의 변호사(정부법무공단 및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다)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보수에 대해서는 「포항시 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 제6조의 특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③ 중요사건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지정사유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이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제10조"를 "제10조의2"로 한다.

제13조 중 "급부판결등에"를 "급부판결 등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확정판결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안"을 "확정판결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비하여"를 "갖추어"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산법무과장"을 "소송총괄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그 밖에 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체없이 징수결정후"를 "지체 없이 징수결정 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송사건에 대하여는"을 "소송사건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지기간 내에"를 "고지기간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및 보완등"을 "및 보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송수행중 관계공무원"을 "소송수행 중 관계 공무원"으로, "포항시자체감사규칙"을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로 진행되는 소송사건의 경우 종이서류 외에 별도의 전자화된 소송자료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본문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를 "붙여 접수일부터 10일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예산법무과장"을 "소송총괄부서장"으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포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또는 포항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송이란 포항시 또는 포항시장과 그 소속기관 (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 제3조(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총괄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 ②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팀·과·소 장 또는 구청 각 과장, 읍·면·동장(이하 "소송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
  -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 서류를 접수한 문서 취급부서에서 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 ② 착오 분류로 소송 관계 서류가 잘못 전달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문서 취급부서에 반송하여 제1항에 따라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 제2장 소송의 제기

제5조(소송제기 요청) ① 시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

는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장의 사전협의를 받아 시장에게 제소방침을 보고한 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 1. 제소이유서
- 2. 소송목적물의 표시
-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 4. 경위서
- 5. 증빙서류
- 6. 참고사항
- ② 시장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사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의 관련 부서에 송부하여야 하며, 소송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판단한다.
  - 1. 소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
  - 2. 당사자 확인
  - 3. 증거자료 조사
  - 4. 포항시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의 의견
-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시장은 소송제기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공무원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민사단독사건 중에서 일정금액초과 사건, 상소심사건 및 민사합의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외 민사단독사건이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사건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 인정할 때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 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 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 3. 증거자료 제출
  -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여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 5.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 6.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의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1. 제1항의 소송진행상황
  -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 3. 소송진행 중 새로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 4. 패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 6.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매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담당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소송담당자는 과장·6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 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징구한다.

- ④ 삭제
-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 2. 변론기일 입회보고(별지 제7호 서식)
  - 3.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을 담당함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장의 지휘를 받으며 소송업무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 제10조의2(중요사건) ① 시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 2. 소송물가액이 30억 원 이상의 민사소송 사건
  - 3.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 ②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소송사건은 법률고문 외의 변호사(정부법무공단 및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다)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보수에 대해서는 「포항시 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 제6조의 특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③ 중요사건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지정사유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이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3장 피소사건의 응소

-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 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명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 ② 준비서면, 답변서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하여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6조부터 제10조의2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 제4장 소송결과의 조치

- 제13조(소송판결에 대한 조치) 급부판결 등에 있어 시가 승소한 때에는 즉시 판결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
  -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
- 제15조(임의 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
  - ② 임의 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한다.
  - 1. 배상금 임의 변제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
  -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 3. 인감증명서
  -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5. 각서(별지 제9호 서식)
- 제16조(소송비용 청구) ① 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총괄부서장은 사건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 정결정 신청을 하고 그 결정문을 소송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

- 1. 상대방이 재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2. 신청 액수보다 신청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
- 3.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을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 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결정 후 고지서 발송
- 2.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소송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사건은 재산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로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항상 파악하여 정리
- 3. 채무자가 고지기간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를 환수
- 4.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
- ③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시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은 지체 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 제17조(소송사건의 원인분석 및 조치) ① 응소포기 및 패소판결의 이유 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은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응소포기 및 패소판결된 사건과 소송수행 중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포항시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판결의 확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가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 일건서류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④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 문서로 진행되는 소송사건의 경우 종이서류 외에 별도의 전자화된 소송 자료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구상권 행사)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 또는 재정보증인이 변상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수 있다.

#### 제5장 행정심판

- 제19조(행정심판청구서 송부) ①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주관 담당 관, 팀·과장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붙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시장 내부위임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부서 장은 본청 주관담당관실·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청에 진달 절차는 제1항과 같다.
  - ③ 행정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진달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법무업무담당주사를 경유하여 소송총괄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기관(이하 "시"라 한다)을 당 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규칙은 포항시 또는</u> 포항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송이란 <u>시</u> <u>를</u>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 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 한다.	제2조(정의) <u>포항시</u> 또는 포항시장과 그 소속기관(이하 " 시" 라 한다)을
제3조(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 은 <u>예산법무과장</u> 의 지휘·통제를 받 아야 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①
② 소송사건은 <u>당해</u>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팀·과·소장 또는 구청 각 과장, 읍·면·동장(이하 "소송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 <u>해당</u>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수 있다.	③ 
<ol> <li>1. · 2. (생 략)</li> <li>3. <u>그 밖에 시장</u>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소송</li> </ol>	1.·2. (현행과 같음) 3. <u>시장</u>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u>소송관계서</u> 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다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u>소송 관계</u> 서류문서 취급부서

른 문서에 우선하여 <u>예산법무과장에</u> 게 분류 발송하여야 한다.

②소송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 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예산법무과장 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제기 요청) ① 시 또는 시장 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예산법무과 장의 사전협의를 받아 시장에게 제 소방침을 보고한 후 예산법무과장에 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 6. 그 밖에 참고사항
- ② 시장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사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 추어 시의 관련 부서에 송부하여야 하며, 소송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 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저 각 호의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시장 이 판단한다.
  - 1. ~ 3. (생략)
  - 4. 포항시 <u>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u> 호사" 라 한다)의 의견
- 제7조(소송대리인등의 선임) ① 시장은 지수송제기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 을 선임("소속공무원중의 대리인"도

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② 착오 분류로 소송 관계 서류가 잘 못 전달되어 이를 접수한 부서에서 는 즉시 문서 취급부서에 반송하여 제1항에 따라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소송제기 요청) ① <u>시가</u>
<u>소송총괄부서</u>
<u>장</u> 소송총괄부서장
<u>제1항에 따라</u>
· 제6조(제소결정)
(소속공무원 중의 대리인

<u>포함한다)</u>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u>제1,2호서식)</u>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다.

- ② · ③ (생 략)
- ④ <u>소속공무원중에서</u>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서(별지 제4호 서식)를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제8조(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u>당해</u>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5. <u>기타 위임장</u>에 위임된 사항과 수 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 6. 제9조제1항 <u>단서의 규정에 의거</u>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 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소송진행중 <u>새로이</u> 야기된 사항 과 예견되는 문제점
  - 4. 5. (생략)
  - 6.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매사건마다

<u>도 포함한다)</u>
제1호 및 제2호 서식)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 <u>(소송대리인 등의 직무)</u> ① 해당
<u></u>
1. ~ 4. (현행과 같음)
5. 위임장
6 <u>단서 규정의</u>
2
<u>.</u>
1. · 2. (현행과 같음)
3
4. · 5. (현행과 같음)
6. <u>시장</u>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매 사건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 된 소송담당자는 소송담당업무에 임 해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소송담당자는 과장·6급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u>직원</u>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징구한다.
- ④ 지명장은 예산법무과장이 교부하 며 동시에 지명된 담당자로 하여금 서약서를 낭독하도록 한다.
-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 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생략)
  - 2. 변론기일 입회보고(별지 <u>제7호서</u> <u>식)</u>
  - 3.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u>소송사건담당</u> <u>에 있어 예산법무과장의</u> 지시를 받 으며 소송업무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신 설>

<u>소속공무원 중에서</u>
(2)
<u>직</u> <u>원 중에서</u>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 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 <u>(별</u> 지 제6호 서식)를 징구한다.
<u>&lt;삭 제&gt;</u>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1. (현행과 같음)
2 <u>제7호</u> <u>서식)</u> 3. <u>시장</u>
② <u>소송사건을 담당</u> 함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장의
제10조의2(중요사건) ① 시장은 소송사 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2조(준용)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제13조(소송판결에 대한 조치) 급부판 결등에 있어 시가 승소한 때에는 즉 시 판결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 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임의 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 제15조(임의 변제) ① -----으로 하는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 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안에 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

하는 경우에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u>수</u> 있다.

- 1.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사건
- 2. 소송물가액이 30억 원 이상의 민 사소송 사건
- 3.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 는 사건
- ②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소송사건은 법률고문 변호사 외의 변호사(정부 법무공단 및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 다)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보수에 대해서는 「포<u>항시 소송사건수임변</u> 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 』 제6조의 특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③ 중요사건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지정사유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이<u>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u>

제12조(준용) ----- 제10조의2-

제13조(소송판결에 대한 조치) 급부판

-확정판결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 --

- ② 임의 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②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갖
- 1. ~ 5. (생략)
- 제16조(소송비용 청구) ① 소송확정으로 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예산법무과장은 사건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고 그 결정문을 소송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
  - 1. (생략)
  - 2. 신청 액수보다 신청에 <u>소요되는</u>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
  - 3. <u>그 밖에 시장</u>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을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 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통보 받은 때에는 <u>지체없이 징수결</u> 정후 고지서 발송
  - 2.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소송사 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재산가압류 등의 사전조 치로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 거지를 항상 파악하여 정리
  - 3. 채무자가 <u>고지기간 내에</u> 소송비

깇 갖추어
1. ~ 5. (현행과 같음)
에16조(소송비용 청구) ①
<u>소송총괄부서장</u>
·
1. (현행과 같음)
2필요한 -
7. <u>5 m f</u>
3. <u>시장</u>
2
1
<u>지체 없이 징수</u>
<u>결정 후</u>
2
<u>소송사건은</u> -
3고지기간에

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 집행에 의하여 이를 환수

4. (생략)

③ (생략)

- 제17조(소송사건의 원인분석 및 조치)
  ① 응소포기 및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된 <u>사항에 대</u>
  하여는 즉시 그 시정 <u>및 보완등</u>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응소포기 및 패소판결된 사건과 소송수행중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포항시자체감 사규칙을 준용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생략)

<신 설>

제18조(구상권 행사)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에 의거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 또는 재정보증인이 변상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소송사건의 원인분석 및 조치)
①
②
-소송수행 중 관계 공무원
「 <u>포항시 자체</u>
감사 규칙」
③ (현행과 같음)
④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
문서로 진행되는 소송사건의 경우
종이서류 외에 별도의 전자화된 소
송자료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구상권 행사)
따라

----소송총괄부서장 -

하여 예산법무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